

## 서대문자연사박물관

###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[시설관리(기계)]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| 채용분야         | 임용등급           | 채용인원 |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| 근무예정부서        | 담당직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관리<br>(기계) | 시간선택제<br>임기제다급 | 1명   | 채용일로부터<br>1년<br>(주35시간) | 서대문<br>자연사박물관 | - 기계·가스설비·건축·조경 등 시설관리업무<br>- 그 외 박물관 시설관리 운영 업무 등 |

※ 사업의 계속,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,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

#### 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 . 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  - ▶ 응시연령 : 18세 이상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」제10조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응시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간선택제<br>임기제 다급<br>(시설관리(기계)) | <p>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소방설비기사(기계분야), 에너지관리기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로서,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○ 경력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등록체 기계설비 안전관리업무, 기계설비 유지보수 관련 근무경력</li> </ul> <p>○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시설관리자 우대</li> </ul> |

※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##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시간 : 주35시간(1일 7시간) ※박물관 특성상 휴관일, 주말, 공휴일 등 근무 가능한 자.

○ 임용등급 및 연봉액

-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: 43,988천원(2026년 연봉하한액 기준)

※ 신규 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,

**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으로 하되**, 채용예정자의 능력,경력,자격에 따라 결정

○ 수당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7.31.(금) ~ 8.4.(화), <3일간 09:00~18:00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>

- 접수방법 :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(대리접수 가능, 팩스·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)

※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

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- 접수처 :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(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)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○ 시험일정

| 내 용         | 일 정               |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차 시험(서류전형) | 2026.08.10.(월) 예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2026.08.11.(화) 예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차시험(면접시험)  | 2026.08.14.(금) 예정 | 서대문자연사박물관<br>(면접시간은 별도 안내) |
|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| 2026.08.18.(화) 예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## 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, 서대문구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 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, 서대문구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, 중, 하로 평가  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## ○ 최종합격자 발표 : 합격자 개별통보, 서대문구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면접합격자 발표 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붙임1) 1부
  - 응시수수료 : 7,000원 (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창구, 문의 330-1150)
 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- 이력서(붙임2) 1부
 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 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붙임3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붙임4) 1부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붙임5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 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붙임7)' 추가 제출
-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 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  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  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」 제8조(응시수수료) 제3항에 따라, 응시원서 접수 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치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 (☎ 02-330-8859)

붙임 :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 끝.